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이상휘 · 백종현
서천호 · 조경태 · 박성민
박덕흠 · 정동만 · 김미애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제로 규정되어 있고,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. 또한, 실제로는 양로·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 특히, 양로시설은 주거·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요양시설은 장기요양·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.

이에 “양로지원”을 “양로·요양지원”으로 확대하고,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, 국·공립 외 양로·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

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양로지원)”을 “(양로·요양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양로시설에서”를 “양로·요양시설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·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·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 외의 양로·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

